

전주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35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피고, 항소인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중, 백솔, 황준호

변 론 종 결 2021. 11. 18.

판 결 선 고 2022. 1. 13.

제1 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3. 10. 선고 2019가단3067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18,256,11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256,1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 ‘2.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E의 재산상태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1심에서 E의 적극재산 중 (차량번호 3 생략) 오피러스 자동차(4,500,000원),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자동차(4,000,000원)의 가액이 과소하게 산정되었고, N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20,000,000원)이 당심에서 새롭게 발견되었으니 이를 추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E의 적극재산은 344,695,900원, 소극재산은 366,600,523원인 바, E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은 170,000,000원으로 그 당시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평가 가액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 피고는 E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E의 채무(85,000,000원)을 인수하였고 그 이후로 위 85,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계속해서 납부해온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취득세를

납부하는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는 점 등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로 인하여 E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관련법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에 관해서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와 E의 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과 경위 및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피보전채권의 발생시기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은 2014. 10. 17.자 100,000,000원(2020. 10. 21. 기준 16,612,453원) 대출금채권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은 2019. 2. 10.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위 대출금채권이 연체된 시기나 E의 폐업일을 피보전채권의 발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듯 하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선, 판사 김진웅, 판사 곽지영